



안전보건공단-대기업과 함께하는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신청 안내

※ 아래 내용은 '23년도 사업 내용으로, '24년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.



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

- ✓ 대기업과 정부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등* 소요비용 지원(대기업 50% : 정부 50%)
- * 컨설팅 및 세미나, 안전보건물품 지원 등 안전보건 활동과제
- **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음

'24년 정부지원 예산(안):90억원



지원 개요

① 유형 컨소시엄 자체 필요분야 중심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

유형내용 컨소시엄*을 구성한 대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상생협력활동(컨설팅+안전보건활동) 비용 지원

* 컨소시엄: 100인 이상 대기업과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의 공동 그룹

② 유형 컨설팅 과제 중심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

유형내용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 컨설팅기관의 안전보건 컨설팅 소요비용을 지원



지원 내용

- ✓ 상생협력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6억원 한도(정부 지원금 기준) 분담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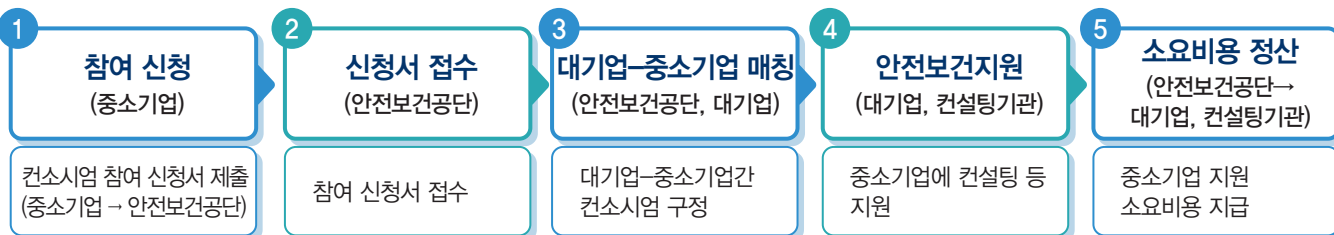
1 유형 컨소시엄 당 최고 2억원 한도로 지원

2 유형 중소기업 1개소 당 최고 3,000만원 한도 (컨소시엄 당 최고 4억원까지)로 지원

※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음(정부와 대기업이 전액 부담)



추진절차



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

기관명	전화번호	주소
서울광역본부	02-6711-2965	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(봉래동, 우리빌딩) 7층
부산광역본부	051-520-0531	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4층
광주광역본부	062-949-8745	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(무역회관 9층)

대구광역본부	053-609-0524	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, 삼성생명빌딩 21층
인천광역본부	032-5100-608	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-1
대전세종광역본부	042-620-5615	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, 2층
경기지역본부	031-259-7172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, 7층



첨부1_매칭지원 컨설팅 과제별 세부내용



구분	지원분야	세부내용
위험성 평가 실행력 강화	산업 안전 분야	기본과제 위험성평가 기법의전수 ☑ 위험성평가 기법 전수 및 실행력 향상 •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유해·위험요인 파악 •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방법 등 • 위험성평가 적정성에 대한 현장 확인 • KRAS(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) 사용법 및 시현 • 위험성평가 연계 TBM 활용법 등
		자율과제 3대사고유형· 8대위험요인 ☑ 중소기업 중대재해 취약분야(3대사고유형·8대요인) 중점으로 유해·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대책 지원 • 추락사다리·지붕·고소작업대·비계, 끼임방호장치·LOTO, 부딪힘혼재작업· 충돌방지장치
		자율과제 폭발위험장소 위험성평가 ☑ 사업장의 폭발위험(인화성·분진 등) 장소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개선대책 제시(폭발위험장소 구분 등) • ① 공정설계도서 파악 ② 공정조사(누출원의 종류, 수, 위치) ③ 누출원 계산 ④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 ⑤ 방폭전기기기 선정 및 관리 ⑥ 폭발위험장소 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등
	산업 보건 분야	자율과제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☑ 화학물질(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 등)에 의한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 수립 • ① 공정선정 ② 화학물질 취급현황 파악 ③ 노출수준 빈도 결정 ④ 유해성 강도 결정 ⑤ 위험성 계산·결정 ⑥ 작업환경 개선대책 수립 ⑦ 예방조치 실행 등
		자율과제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 ☑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/부서/라인/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 조사 및 대책 수립 • ①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②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(공정별) ③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(설문지) ④ 유해요인조사 증상조사표 (통계) ⑤ 작업환경개선 계획서 작성 ⑥ 작업환경 개선 실시 ⑦ 유해성 주지 (교육) 및 조사방법 교육 등
		자율과제 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 ☑ 사업장 내 밀폐공간 조사, 유해가스 측정 등 • ① 밀폐공간 조사 ② 밀폐공간프로그램 수립절차 ③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④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대책 ⑤ 보호구 ⑥ 밀폐공간 표지부착 및 교육 등
안전관리 역량향상	자율과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	☑ 위험성평가 중심의 체계구축 평가 및 개선대책 제시 •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요소 * ①위험요인 파악 ②위험요인 제거·대체 및 통제 ③ 경영자리더십 ④근로자 참여 ⑤비상조치 ⑥도급관리 ⑦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
안전의식 확산	각 과제별 포함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	☑ CEO 인식개선,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, 근로자 위험인지 향상 등





첨부2_안전보건활동 세부내용

- ☑ 매칭지원 컨설팅 과제 이외에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안전보건 활동과제
(사업비 정산 : 총 소요비용의 50%를 공단 → 대기업에 정산·입금)



1 안전보건 세미나(간담회, 포럼 등)

- 주제 : ① 매칭 컨설팅 과제(7개) 관련, ② 산안법 및 중대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등
- 대상 : 사업 참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 CEO, 근로자 등
- 예산지원 범위 : ① 장소 임차료, ② 참석자 식대(1일 최대 3식), ③ 출장 여비, ④ 강사료, ⑤ 안전보건 홍보물(참석자 당 1개), ⑥ 세미나 물품(현수막, 다과, 발표용 프로젝트 일체(임차), 필기류 등) 등

2 안전보건 캠페인

- 주제 : ① 매칭 컨설팅 과제(7개) 관련, ② 안전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관련 등
- 대상 : 사업 참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 CEO, 근로자 등
- 예산지원 범위 : ① 참석자 식대(1일 최대 2식), ② 캠페인 필요 물품(현수막, 피켓 등) 등

3 안전보건 물품

지원품목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①항3호에 따른 개인보호구(안전인증 대상품) 등
①안전모, ②안전화, ③안전장갑, ④방진마스크, ⑤방독마스크, ⑥송기(送氣) 마스크, ⑦전동식 호흡보호구, ⑧보호복, ⑨안전대, ⑩보안경, ⑪용접용 보안면, ⑫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, ⑬폭염대비 예방물품(쿨-키트), ⑭방한키트
- ①자동제세동기(AED), ②가스농도측정기, ③산소농도측정기, ④공기치환용 환기팬, ⑤검전기, ⑥접지저항측정기, ⑦절연저항측정기, ⑧클램프미터, ⑨만능회로측정기, ⑩열화상카메라, ⑪누전차단시험기, ⑫소음측정기, ⑬혈압계, ⑭조도계, ⑮위험물보관저장설비, ⑯지게차 안전장치
- 안전보건표지(스티커 등), 소화기 등

지원대상 사업 참여 중소기업 및 근로자

예산지원 범위

- 지원품목 1) : ① 소모품(방진마스크, 보호복)의 경우 근로자 1명 당 3개월 수량(60개 내외),
② 안전모·안전화·안전장갑은 근로자 1명 당 1개 (단, 쿨-키트는 근로자 1명당 5개 이하)
③ 그 외 품목은 작업조건(공정)별에 따라 근로자 1명 당 1개 (근로자 배치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)

지원품목 2) : 중소기업 당 1대

- 단, 고정설치형의 가스농도측정기·산소농도측정기, 공기치환용 환기팬, 위험물보관저장설비는 필요공정 수량만큼 지원하되, 지원기업 당 최대 3대 이하(공정개요 설명서 등 관련자료 제출)
- 개인 휴대형 가스농도측정기, 산소농도측정기는 필요 근로자수 만큼 지원
(공정별 근로자 배치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)

지원품목 3) : 중소기업 당 필요수량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





첨부2_안전보건활동 세부내용

4 안전보건자료 제작·배포

- 1) 주제 : ① 매칭 컨설팅 과제(7개) 관련 , ② 산안법 및 중대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등
- 2) 제작범위 : 사업 참여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
- 3) 예산지원 범위 : 자료 제작·배포 비용 등

5 외부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지원

- 1) 주제 : ① 매칭 컨설팅 과제(7개) 관련, ② 산업안전보건분야 관련 등
- 2) 지원대상 : 사업 참여 중소기업 CEO, 부서장급 이상 또는 관리감독자(또는 이에 준하는 자), 안전보건관리담당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(모기업 제외)
- 3) 예산지원 범위 : ① 교육비, ② 교육출장 여비 등

6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전용 프로그램 S/W(플랫폼) 구축·운영

- 1) 주제 : 산안법 및 중대법 관련 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 등
- 2) 대상 : 사업 참여 중소기업

7 안전보건진단

- 1) 주제 :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
- 2) 대상 : 사업 참여 중소기업(대기업의 사내협력사는 제외)
- 3) 진단기관 :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(건설분야 제외)

8 근로자 휴게시설

- 1) 지원종류(TYPE) : 컨테이너하우스 또는 조립식
※ 지원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(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)를 충족하여야 함
- 2) 대상 : 사업 참여 중소기업(대기업의 사내협력사는 제외)

9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

- 1) 대상 : 사업 참여 중소기업(대기업의 사내협력사는 제외)
*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별표21 「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」 보유 사업장에 한함
- 2) 측정기관 :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

10 기타(상기 과제·물품 외)

- 1) 지원결정 : 매칭지원 계획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
- 2) 기타 :
 -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예산지원 범위 및 사업비 정산 제출 자료 등 통보(공단→대기업)
 - 상기 1~6번 활동에 명시되어 있는 “예산지원 범위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관련 활동수행에 필요한 사항(항목)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

